

서 면 답 변 서

○김용석 의원

(질의요지)

□ 서울시의회의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?

(답 변)

□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.

○ 지방의원은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제3항에 의하여 특수경력직 공무원중 정무직공무원으로 '선거로 취임한 자'로 규정하고 있으며,

※ 형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(대법원 1997.3.11., 선고 96도 1258판결)

- 특수경력직공무원의 보수에 관해서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조에 따르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동법 제45조(보수에 관한 규정)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, 「지방공무원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2조에서도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의 종류·지급범위·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
- 그런데,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 비용의 종류, 지급기준, 지급금액 및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「지방자치법」 및 동법 시행령, 「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」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.

따라서, 지방의회의원은 「지방공무원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수당 및 실비보상 등(명절휴가비 포함)의 지급대상이 아님.

또한,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(안전행정부)에서도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다음 9가지 경비로 유형화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며, 의정운영과 관련된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.

▶ 9개 통계목 : 의정활동비, 월정수당, 의원국내여비, 의원국외여비, 의정운영공통경비, 의회운영업무추진비, 의정단협의체부담금, 의원국민연금부담금, 의원국민건강부담금

※ 참고 : 지방공무원 수당 등 처리지침(행안부 예규 제116호)

연봉제 대상인 정무직 공무원 및 1급~4급 공무원에게도 명절휴가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며, 명절휴가비 지급대상자에게 명절휴가비 지급시 「지방공무원 보수 규정」에 규정된 **봉급표상**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- 참고로,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「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」, 「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」, 「국회의원수당 등에 지급에 관한 규정」을 근거로 지급되고 있으며, 명절휴가비는 「국회의원수당 등에 지급에 관한 규정」 제2조에서 기타수당 및 실비변상 등의 지급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지급되고 있는 것임.